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7. 22.,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 7.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정무위원회 (2024. 9.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4. 11. 28.)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1차 정무위원회 (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부)

제대군인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¹⁾에 한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사기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사기업체 등은 능력급제, 직무급제 등 직급·급여체계가 다양한바 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용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그리고, 개정안은 근무경력에 포함되는 대상을 ‘호봉이나 임금’으로 한정하고 ‘경력’은 제외하고 있는바, 경력을 포함할 경우 중복 혜택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등의 반론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부칙의 적용례(안 부칙 제3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채용 또는 고용되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이라도 어떤 사정에 따라 새로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함. 심사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동 규정은 복무기간이 20년에 못미쳐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의무복무제대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법률자문 등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유족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보훈영역에서 혜택이 많지 않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과 생활안정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②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다만, 개정안은 법률 구조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지원 필요성’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 바,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의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